

## 지리적 표시제의 개요 및 발전방향



### 황 은 선

농림부 식품산업과

## I. 지리적 표시제의 생성 및 국내 도입 배경

### 1. 국제적 발전 배경

지리적 표시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국제무대에서 120여년 이상 논의되어 왔으며, 현재의 지리적 표시제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지역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하는 방법을 찾아나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형, 토양, 기온, 강수량 등의 지리적 특성은 동 지역 내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맛, 향기, 색 등 품질 특성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고 상품의 가격형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정당한 지리적 표시 사용자의 보호는 오랫동안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17세기 이후 서구 각국들은 자유무역이란 기틀 안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리적표시제」라는 제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국제거래에 대한 신뢰 확보와 속임수에 대한 규제

를 위해 국가간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협약으로 체결되었다.

파리협약(1883)은 지리적표시제와 관련한 최초의 협약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초로 원산지 표시(indication of origin)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주된 내용은 상품의 재료, 생산자의 신분 등을 직간접적으로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거나 상품을 압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허위 표시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제도를 거부하고 가짜 상표명과 함께 사용하거나 남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만 금지하도록 하였다.

마드리드 협정(1891)은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에 관한 좀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허위나 오인을 유발하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경우 압수할 수 있도록 했고, 포도주와 관련된 일반화된 명칭 사용이 원산지 명칭 사용과 상충되는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리스본 협정(1958)에서는 현재의 지리적표시에 대한 등록 및 보호 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하거나 속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어떠한 형태의 원산지 명칭 사용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지리적 표시를 원산지 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WTO/TRIPs<sup>1)</sup> 규정(1994)과 EU 이사회 규정의 지리적 표시로 발전시켰다.

WTO/TRIPs 협정(1994)이 체결됨에 따라 현재의 지리적표시제가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 협정은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중이던 1990년 당시 EC가 제출한 '무역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초안'을 바탕으로 하고 1991년 마련된 '던켈(Dunkel)안'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TRIPs 협정 이전에 체결된 협정문은 협상 당사국의 자발적인 무역협약에 불과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TRIPs 협정의 체결로 WTO 회원국 전체가 협정 이행의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2.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유럽연합과 체결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의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에서 “원산지명칭을 포함한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법률을 1998년 7월 1일까지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7월 1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지리적표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칭·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

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제는 WTO/TRIPs에 따라 법제화된 것으로 동협정의 지리적표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0월에 관련 법령 및 체크리스트를 WTO 사무국에 제출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지적재산권 제도이다. 지리적표시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 II.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류를 신청하여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8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내용과 절차는 아래와 같다.

### 1. 등록신청(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1.1.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은 특정지역 내에서 지리적 특성을 갖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단체(법인에 한함)에 한하여 할 수 있다(다만,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예외).
  - 생산자 단체 및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는 특별한 사유없이 지리적표시 등록기준을 갖춘 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1)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제24조9.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나라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표시는 이 협정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없다.”

- 1.2.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축산물)이나 산림청장(임산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 포함)
  -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자체 품질기준
  - 품질관리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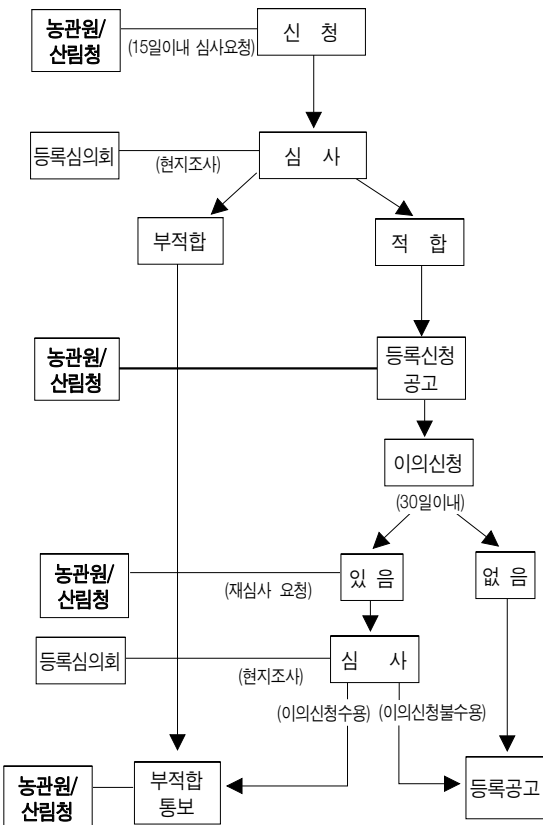


그림 1.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 절차

## 2. 심사요청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의 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지리적 표시등록심의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 ※ 지리적 표시등록심의회(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지리적 표시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지리적 표시등록심의회를 둔다. 동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 3. 등록심사(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3.1. 지리적 표시등록심의회는 신청내용이 아래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 지리적 표시의 명칭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 자체 품질기준의 적절성
-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의 범위
- 기타 필요한 등록요건
- ※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일 것
  - 당해 품목의 명칭 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 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당해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일 것
  -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리적표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현지 조사위원회의 구성(농림부 훈령 제1209호 제7조)
  - 지리적 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은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서와 등록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조사위원회의 현지조사는 해당품목이 재배 또는 생산되는 시기에 수행하며, 조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 각 항목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등록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장은 지리적 표시등록심의회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등록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합여부를 통지한다.

- 등록신청공고, 부적합사유, 자료보완요구 등

4. 등록신청 공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4.1.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장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이 있음을 공고한다.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2.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 공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공고한다.

-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의 범위

5. 이의신청 및 심사(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8조)

5.1. 등록신청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

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심사를 거쳐 그 결과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2.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정당한 사유가 판단되거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6. 등록 및 등록공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9조)

6.1.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장은 지리적 표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지리적 표시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6.2. 등록공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 지리적 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7. 명칭사용 및 표시방법(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명칭을 표시하고 지리적특산품의 포장·용기 등에 별표 4의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할 수 있다.

## 8. 등록취소 및 취소공고(농산물품질관리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19조)

8.1.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장은 취소사유가 있어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공고를 하여야 한다.

### 8.2. 등록취소사유

-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3차에 걸쳐한 때
- 지리적 표시의 등록기준을 2차에 걸쳐 위반한 때
-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를 한 때
- 지리적 표시등록을 받은 자가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지리적특산품의 생산이 곤란한 때

### 8.3. 등록취소 공고 사항

- 취소일자 및 등록번호
-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지리적 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취소사유

## 9. 지리적특산품의 보호 및 사후관리

### 9.1. 허위표시 등의 금지(농산물품질관리법 제9조)

- 지리적 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금지
- 지리적특산물에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금지

### 9.2. 사후관리(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장은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① 지리적 표시품의 등록요건의 적합성 조사
  - ② 지리적 표시품의 관련서류 등의 열람
  - ③ 지리적 표시품의 시료수거·조사, 전문시험 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 9.3. 취소 등의 행정처분(농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

-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장은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지리적특산품이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33조).

### 9.4.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리적특산품의 허위·유사표시, 지리적특산품의 혼합 판매 또는 진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사후관리를 위한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Ⅲ. 지리적표시제 시행의 성과 및 문제점

### 1. 지리적표시제의 성과 및 기대효과

지리적표시제는 특정지역의 자연환경과 인적요

인이 빚어낸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지역의 공동재산으로 보호하고 그 지역과 관련 없는 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로서,

- 생산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품의 품질관리와 차별적인 유통제도를 통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 소비자는 농산물의 생산정보에 대한 알권리의 충족과 질 좋은 농산물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며,
- 해당지역은 그 지역 내에서 농산물의 생산·조제·가공의 전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농업·농외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이농방지 및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 국가는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의 보호와 외국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 및 국산농산물을 국

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02년 1월 전남의 보성녹차가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되었다. 2007년 9월 현재 이천쌀, 경기미, 순창고추장, 보성녹차, 하동녹차, 의성마늘, 성주참외, 철원쌀, 고흥유자, 제주돼지고기, 고려인삼, 안동포, 한산모시, 양양송이, 상주곶감, 정안밤, 고창복분자주 등 50개의 지리적 특산품이 등록되어 있으며(표 1), 약 10여개의 품목들이 심사중에 있다. 제도 초창기에는 등록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등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에 산재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발굴하고 등록시킴으로써 지역특산품의 품질향상 및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 농축산물

(2007. 9. 20 현재)

등록번호	품 목	등록일	등록명칭	등 록 자
제1호	녹차	02. 1. 25	보성녹차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
제2호	녹차	03. 5. 2	하동녹차	하동차영농조합법인
제3호	복분자주	04. 1. 15	고창복분자주	고창 으뜸복분자주영농조합법인
제4호	마늘	05. 3. 5	서산마늘	서산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영농조합법인
제5호	고춧가루	05. 3. 5	영양고춧가루	영양고추영농조합법인
제6호	마늘	05. 7. 18	의성마늘	의성마늘생산자단체협의회영농조합법인
제7호	고추	05. 8. 25	괴산고추	괴산고추영농조합법인
제8호	고추장	05. 10. 14	순창전통고추장	영농조합법인순창전통고추장연합회
제9호	고춧가루	05. 11. 7	괴산고춧가루	괴산농업협동조합
제10호	참외	05. 12. 1	성주참외	성주참외생산자단체협의회영농조합법인
제11호	겨울배추	05. 12. 26	해남겨울배추	해남겨울배추협의회영농조합법인
제12호	쌀	05. 12. 26	이천쌀	이천쌀사랑영농조합법인
제13호	쌀	05. 12. 26	철원쌀	철원오대쌀생산자영농조합법인
제14호	유자	06. 5. 8	고흥유자	고흥유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
제15호	찰옥수수	06. 6. 5	홍천찰옥수수	홍천찰옥수수영농조합법인

제16호	쭈	06. 8. 7	강화약쭈	강화군산림조합
제17호	한우고기	06. 9. 11	횡성한우고기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
제18호	돼지고기	06. 9. 19	제주돼지고기	사단법인제주수출육가공협회
제19호	홍삼	06. 12. 7	고려홍삼	(사)고려인삼연합회
제20호	백삼	06. 12. 7	고려백삼	(사)고려인삼연합회
제21호	태극삼	06. 12. 7	고려태극삼	(사)고려인삼연합회
제22호	삼베	06. 12. 7	안동포	안동포생산자영농조합법인
제23호	사과	06. 12. 11	충주사과	충주사과생산자단체협의회영농조합법인
제24호	사과	06. 12. 29	밀양얼음골사과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영농조합법인
제25호	모시	06. 12. 29	한산모시	(사)한산모시조합
제26호	홍주	06. 2. 23	진도홍주	(사)진도홍주연합회
제27호	황기	06. 5. 8	정선헌기	정선헌기생산영농조합법인
제28호	마늘	07. 5. 2	남해마늘	남해마늘 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제29호	마늘	07. 5. 4	단양마늘	단양마늘 동호회영농조합법인
제30호	양파	07. 6. 5	창녕양파	창녕명품양파 영농조합법인
제31호	양파	07. 7. 2	무안양파	무안양파 영농조합법인
제32호	쌀	07. 7. 11	여주쌀	(사)여주쌀 생산자협의회
제33호	백련차	07. 7. 11	무안백련차	연마을 영농조합법인
제34호	사과	07. 8. 27	청송사과	청송사과영농조합법인
제35호	복분자	07. 8. 27	고창복분자	고창복분자연합회영농조합법인
제36호	매실	07. 8. 27	광양매실	광양매실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제37호	찰옥수수	07. 8. 27	정선찰옥수수	정선찰옥수수영농조합법인

□ 임산물

등록번호	품 목	등록일	등록명칭	등 록 자
제1호	송이	06. 3. 27	양양송이	양양소이버섯영농조합법인
제2호	표고	06. 5. 16	장흥표고버섯	정남장흥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
제3호	꽃감	06. 6. 9	산청꽃감	산청군농협협동조합
제4호	밤	06. 9. 15	정안밤	정안밤생산자영농조합법인
제5호	삼나물	06. 12. 15	울릉도삼나물	울릉농업협동조합
제6호	미역취	06. 12. 15	울릉도미역취	울릉농업협동조합
제7호	참고비	06. 12. 15	울릉도참고비	울릉농업협동조합
제8호	부지갱이	06. 12. 15	울릉도부지갱이	울릉농업협동조합
제9호	대추	07. 1. 3	경산대추	경산대추생산자단체협의회
제10호	송이	07. 1. 3	봉화송이	봉화산림조합
제11호	구기자	07. 2. 1	청양구기자	청양구기자생산자영농조합법인
제12호	꽃감	07. 6. 12	상주꽃감	상주꽃감발전협의회영농조합법인
제13호	고사리	07. 7. 16	남해창선고사리	남해창선농협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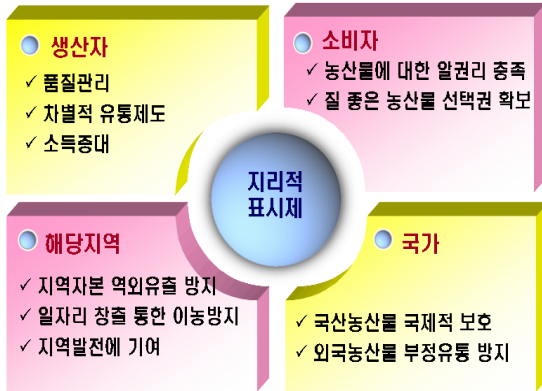


그림 2. 지리적 표시제의 기대효과

## 2. 문제점

국내 지리적표시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제도의 이원화를 들 수 있다. 앞서 서술한 국제적인 배경에 의해 농림부에서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였고, 특허청도 2004년 상표법을 개정하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를 도입하면서 제도가 중첩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리적 명칭을 포함한 상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의 충돌 등으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표 2. 지리적 표시제(농림부)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특허청) 비교

구분	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
법률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1999년 도입)	상표법(2004년 도입)
신청자격	특정 지역안에서 지리적 표시대상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
등록대상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제한 없음 (모든 상품)
심의기관	지리적 표시등록심의회	심사관 1인
등록절차	신청→지리적 표시등록심의회 심사 및 현지조사→신청공고→(이의신청→지리적 표시등록심의회 심사)→등록공고	출원→심사관 심사→출원공고→(이의신청→심사관 심사)→등록공고
등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의 우수성(명성, 품질, 그 밖의 특성)</li> <li>· 명성과 지리적특성의 인과성</li> <li>· 대상지역 안에서 생산 및 가공</li> <li>·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한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li> <li>· 명성과 지리적 특성의 인과성</li> <li>· 대상지역의 정의</li> <li>· 단체의 특성</li> </ul>
등록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 표시 배타적 사용가능</li> <li>· 항구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 표시 배타적 사용 가능</li> <li>· 10년</li> </ul>
침해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표시 금지(법9조) 규정</li> <li>·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상품에 지리적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li> <li>· 지리적특산품에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상품을 혼합하여 판매, 판매목적의 보관, 진열 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상표 사용, 교부·판매·위조·모조·소지, 위조·모조용구 제작·교부·판매, 유사 상표 양도·인도 위반 소지(법66조 2항)</li> </ul>
권리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적 구제(국가에 의한 사후관리 및 과태료 부과)</li> <li>· 형사적 구제(허위표시, 유사 표시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li> <li>· 민사적 구제는 일반 민사법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사적구제(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li> <li>· 형사적구제(침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li> </ul>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한 사후관리명문화</li> <li>· 지리적 표시 등록의 직권취소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없음</li> <li>· 이해관계자들의 신청에 의한 무효·취소 소송</li> </ul>



## 2.1.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표시 보호의 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상표제도를 장기간 운용하고 지리적 용어(geographical terms)로 구성되는 상표를 다수 허용한 결과 아래의 사례와 같이 지리적 용어를 포함하는 결합상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 〈사 례〉

- 특정문양과 결합된 보성녹차, 동원보성녹차, 보성녹차골드
- 몽고순창고추장, 동원순창, 가나안순창고추장, 아씨순창고추장
- 임금님표이천쌀, 진상골이천쌀, 이천쌀의 명가 갑순이네쌀

그러나 상표에 포함된 이들 지명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사실상의 식별력이 있어 진정한 원산지에 대해 대중의 오인·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지정상품의 원료가 진정한 원산지에서 유래하도록 명기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진정한 원산지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리적 표시는 지역 공동 이용권의 성격이 강한 반면, 상표는 특정인의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정 지리적 표시를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 제도는 상호간에 조화되기 어렵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는 것은 특정 지리적 표시가 배타적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진정한 권리가 없는 제3자는 어떠한 소개수단(상표 또는 기타 소개수단)으로도 동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유사 상표로부터 소비자의 혼동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상표인 '보성'과 지리적 표시인 '보성'에 대한 혼동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 특정 지리적 용어가 다수의 서로 다른 상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상표법령과 제도운영의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가 배타적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 따라서 외국 입법사례에서처럼 지리적 용어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을 일반적으로 거부하도록 상표법을 개정하는 것이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이고 WTO TRIPs를 준수하는 방안이다.

## 2.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 관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는 상표법 51조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과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지리적 표시의 실질적 보호가 어렵게 되었다. 즉, 동일 지리적 권역의 생산자가 동일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이미 상표로 동일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리적 표시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품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리적 표시 이용권자가 될 수 없는 인근 생산자도 동일한 지리적 표시 사용이 정당화 되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행하며 궁극적으로 지리적표시의 명성이 희석되며
- 동일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표권자는 상품의 원료사용이나 제조방법 등이 지리적표시의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도 동일 지리적 표시 사용이 정당화되어 역시 도덕적 해이 및 지리적 표시권자의 명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단체표장제와 병렬적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를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는 특별한 지리적 표시 등록·보호제와 단체표장제를 결합하는 형태의 제도로 국제적으로도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제도이다.

### 2.3.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 관련

현행법상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선등록 지리적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 지리적 표시를 배타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동일한 단체가 농림부와 특허청에 이중등록하는 경우  
 두 제도간의 민사적(민사 특례와 민사 일반 규정), 형사적 보호의 내용이 상이하여 권리 주체간 충돌 발생 가능성이 높다.
- 서로 다른 단체가 농림부와 특허청에 이중등록하는 경우
  - 동일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두 단체 중 하나는 농림부에 등록하고 다른 단체는 특허청에 등록하는 경우 신청단체의 구성원, 사용하는 원료 등이 이질적일 수 있어서 지리적 표시는 같은데 그 내용이 상이한 문제가 발행할 우려가 있고
  - 향후 상이한 두 권리 주체간에 진정한 원산

지에 대한 권리 분쟁이 발생하여 경제적·정신적 피해 우려가 높으며 두 단체간 품질이 차별화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여 지리적 명성이 희석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지리적 표시(명칭)가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농림부 지리적 표시 등에 사용될 수 있어 외국의 지재권 전문가로부터 우리의 특정 지리적 표시가 배타성이 없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이원화로 인해 동일한 지리적 표시의 이중등록에 따른 신청자의 비용부담 증가, 동일한 지리적 표시를 법적 보호의 성격이 다른 두 제도에 등록함으로써 이원적 권리주체간 권리다툼 등 권리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태가 되었다. 국내의 이원화된 제도적 문제점은 2005년 한·EU 지리적 표시 국제세미나 및 지난 한·미 FTA 협상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 협상에서도 EU측은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제도 이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우리 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지리적 표시제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다.

표 3. 농림부와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제도 중복에 따른 문제점

문제점	주요 내용
행정력의 낭비 및 민원인 불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권리를 두 제도로 보호함으로써 행정비용 이중 발생</li> <li>· 하나의 단체가 두 법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과도한 용역비용</li> </ul>
유통질서 문란 및 소비자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 도입으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상표의 난립</li> <li>· 진정한 지리적 특산물과의 구별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 혼란</li> </ul>
등록권자간 권리 충돌 및 혼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지역에서 하나의 단체는 농림부에, 다른 단체는 특허청에 등록하는 경우 두 단체간 권리 분쟁 소지</li> <li>· 등록권자의 배타적 권리 범위가 서로 상이하여 혼란 유발</li> </ul>
지속적인 사후관리 부재로 나타나는 품질하락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에 불과하고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의미하지는 않음</li> <li>· 사후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유명무실화 가능성</li> </ul>
국제협상 관련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EU FTA, DDA 협상에서 우리의 이중제도가 계속 문제될 가능성</li> <li>· 05년 한·EU 지리적 표시 국제세미나 및 07년 한·미 FTA에서 우리의 이중적 등록 체도에 대해 의문 제기</li> </ul>

#### IV. 한·EU FTA 연관성 및 파급효과

국제사회에서 지리적 표시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품질정책의 골격을 이루고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지 이미 오래다. 농업에 오랜 역사를 지닌 EU 회원국들은 지리적 표시를 보호 육성하는 것이 신대륙의 저가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공세를 이겨내는 지름길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협상 테이블에서 지리적 표시제를 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U는 오랜 기간 지리적 표시제를 적극 실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리적 표시 상품을 충분히 개발하고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 상품이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EU의 증류주 수출액의 약 60%를 지리적 표시 상품이 차지하고 있다. EU의 지리적 표시 등록품은 약 76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매출액도 상당하다. 지리적 표시제가 정착된 유럽의 경우 지리적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의 80% 이상이 지리적 표시 등록품을 자주(혹은 종종) 구매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국내에서 일반명사처럼 통용되어온 샴페인, 코냑, 스카치, 보르도 등의 명칭을 더 이상 함부로 국내 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포도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2000년 주세법령에서 원산지 표시를 한 포도주 및 증류주의 명칭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럽의 지리적명칭을 국내 주류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향후 협상에서 EU는 지리적 표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행정관리 체계 도입과 이를 위한 효

율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협상의 골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EU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관련법을 검토하며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리적표시를 보호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 보호체계에 있어서 미흡한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번 한·EU FTA 협상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전략은 우리 농업의 중요한 정책이다. 지리적 표시제는 이와 같은 정책방향과 잘 부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중등록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효율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EU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지리적 표시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EU FTA 협상을 계기로 국내 농산물과 식품의 EU 시장 진출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자체와 농가는 유럽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농식품을 수출 유망상품으로 적극 개발해야 한다. 현재 50개의 지리적 표시 등록품이 있는데 이들을 수출 유망상품으로 홍보하는데 지리적 표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고려인삼, 이천쌀, 순창고추장 등에 고려인삼, 이천쌀, 순창고추장 등 국내 유명 지리적표시를 도용한 침해행위 사례 발굴, 이들 상품의 유통 금지 및 침해행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인삼, 쌀, 고추장, 녹차 등 우리 고유상품의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V. 맺음말

지리적 표시제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에 잘 적용시키기 위해 농림부는 지리적 표시 관련 교육

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4월과 7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지리적 표시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외 지리적 표시 등록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시·군 및 시·도 담당자, 컨설팅 기관 등을 상대로 지리적 표시 등록, 품질관리, 표시 등에 대해 정기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지리적 표시가 잘 정착된 선진국과 정기적인 기술·정보 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 제도를 국제적인 수준

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지리적 표시제는 품질, 전통, 명성을 지켜준다는 점 외에도 농촌개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프랑스 등의 사례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보호를 받은 제품들은 해당 지역의 원산물 사용 외에도 해당 지역의 노동력, 농촌지역의 다양성 유지, 지역 공동체 통합 유도, 관련 업종의 신규 노동수요 창출 등의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농식품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4.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방안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워크숍 개최</li> <li>· 지리적 표시 등록품목의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 박람회, 판매전 등 소비촉진 행사시 지리적 표시 특산품 전시홍보지원</li> </ul> </li> <li>· 지자체,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li> </ul>
정부의 간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농업정책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li> <li>· 국내 박람회, 전시회에 독립 전시관 설치</li> <li>· 해외 박람회 참가 우선 선정</li> <li>· 식품업체 우선구매 알선</li> </ul>
국제교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 표시 국제 심포지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프랑스 등의 전문가 초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li> </ul> </li> </ul>
국제협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 표시제 국제 협상에 적극 대응</li> <li>· 지리적 표시 보호관련 국제 분쟁, 협상동향 분석 및 우리측 협상전략연구</li> <li>· 현재 추진중인 한·EU FTA 협상에서 적극적 입장개진</li> </ul>
제도 단일화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등록제 이원화 해소 방안에 대해 특허청 등과 협의</li> <li>· 지리적 표시는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로 유럽연합 등과 같이 농식품의 생산, 품질관리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을</li> <li>· 지리적 표시가 동일 품목에 중복 등록될 수 없도록 영역을 나누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 농산물 및 그 가공품</li> <li>- 특허청 : 광물, 공산품, 기타 상품</li> </ul> </li> </ul>